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3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5.
3. 회 부 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개정안은 현재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 ----- <u>2천만원</u>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은 이 법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원산지 미표시, ②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③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방치 금지 의무 위반, ④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⑤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의무를 보다 강한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현황 ①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부과건수	1,481	1,540	1,705	1,517	1,571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인상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제도를 준수할 유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이미 현행법은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표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례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보다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¹⁾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현행법으로도 대부분의 경우에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건수의 비중이 90% 가량에 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현황 ② 】

(단위: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100만원 미만	1,395 (94.2)	1,384 (89.9)	1,525 (89.4)	1,384 (91.2)	1,498 (95.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9 (5.3)	139 (9.0)	157 (9.2)	124 (8.2)	66 (4.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0.3)	15 (1.0)	21 (1.2)	5 (0.3)	4 (0.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0 (0.0)	0 (0.0)	0 (0.0)	1 (0.1)	0 (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 (0.1)	0 (0.0)	0 (0.0)	0 (0.0)	0 (0.0)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2 (0.1)	2 (0.1)	2 (0.1)	3 (0.2)	3 (0.2)
합계	1,481 (100.0)	1,540 (100.0)	1,705 (100.0)	1,517 (100.0)	1,571 (1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19일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²⁾을 의결하였는데,

소위심사 과정에서 개정안³⁾ 중 현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내용을 앞서 검토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안에 반영하지 않은 점 역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임시) 의안번호 DD2069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중

3)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617호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⁴⁾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416

4)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